

특별공급 청약안내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청약 일정

| 구분 | 신청일자 | 접수장소 및 시간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2022.06.14.(화) ~2022.06.15.(수) | • 청약Home 인터넷 09:00 ~ 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주택형별 대상 세대

| 구분 | 84A | 84B | 84C | 110A | 110B | 합계 |
|---------------------|-----|-----|-----|------|------|-----|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89 | 44 | 5 | 18 | 17 | 173 |

▣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군 내 산업단지의 입주(예정포함)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시 근로자¹⁾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²⁾ ②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의 종사자 ③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④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¹⁾ 상시근로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한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²⁾ 종사자 : 해당 기관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무기계약직 포함). 단, 견습·수습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된 기업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사람에 한함 |
| 유의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대표 및 임원의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종사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함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원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음성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음성군내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되므로 과거 특별공급 당첨사실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 불가 |

▣ 대상기관의 범위

| 구분 | 내용 |
|--------------|--|
| 특별공급 대상 산업단지 | 대풍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이테크산업단지, 음성하이텍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중부산업단지, 오선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유촌산업단지, 육령산업단지, 음성농공단지, 금왕농공단지, 삼성농공단지, 성본산업단지, 상우산업단지, 리노삼봉산업단지, 금왕테크노산산업단지, 성안산업단지, 성안제2산업단지, 인곡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충북전원음성혁신도시도시첨단산업단지 ※ 대소산업단지 및 소이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가 아니며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대상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
| 입주기업의 업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식·문화·정보통신·재활용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의 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 관계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안내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

※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 이후 파기)

| 구분 | 필수 | 추가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유의사항 |
|-----------------------|----|-------|-----------------------|---|--|
| 공동 서류 | ○ | | 신분증 사본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처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
| 이전기관 (산업단지) 종사자 | ○ |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hc/2022/eumseong2/)에서 서식 다운로드 |
| | ○ | | 사업자등록증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국. 공립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
| |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법인인 경우 필수 제출 |
| | ○ | | 법인인감증명서 | - | • 법인 인감증명서(국. 공립 유치원. 학교 및 공공기관 제외) |
| | ○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증명서 | -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유치원. 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만 해당) |
| | ○ | | 재직증명서 | - | • 재직 증명서(유치원. 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만 해당) |
| | | ○ | 입주기업확인서 | - | • 입주예정기업의 경우 : 해당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확인서" 발급 ※ 입주예정기업이 요청 하여야 발급가능(개인요청 발급 불가) |
| 부적격 소명자료 | | ○ | 음성군 내 주택소유 관련 소명자료 | 해당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기타 | -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입주기업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발급번호 | | 발급일자 | | | |
|------|-----------------------------|---------------------------------|-----------------|----------------|---------------|
| 신청인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811111-1234567 | |
| | 직위(직급) | 부장 | 근무기간 | 10.11.11~현재 | |
|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우아파트 101동 101호 | | 전화번호 | 010-1234-4567 |
| | 입주기업 | 근무부서(파견자 등은 원소속부서) 경리부 | 입주(예정) 사업장[√] | | |
|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리업무 | | 입주(예정) 종사자[√] | | |
| 소속기관 | 기관명 | 기업명 |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 | 62명 |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101010-2020202 | | |
|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분산업단지 OO블록 | | | | |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06월 12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해당업체
인감날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색상이 어두운 칸을 작성합니다.
 - 가. "발급번호"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명-일련번호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 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입주(예정) 사업장[]"에 √표시를 합니다.
 - 다.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한 경우) 소속 종사자에 대해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를 합니다.
 - 라.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경우) 입주예정인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가 있거나, 입주하지 않는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 종사자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를 합니다.
 - 마.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가 된 종사자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기업과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